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5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추경호·정희용·홍문표

이 영ㆍ이명수ㆍ서일준

金炳旭・송언석・성일종

김정재 · 김희국 · 윤두현

김예지 · 강기윤 · 권영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산업의 비대면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5G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5G망 조기 구축을 제시하였음.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6.2% 감소하였고, 2020년 1분기 역시 전 분기 대비 3.5% 감소하는 등 국내 경제 위기 확산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축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통신산업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 등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2019년 설비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52.4% 증가하였음.

그러나 현 정부의 조세 강화, 규제 역행 등 반 시장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급 감, 기업 공장 해외 이전, 높은 실업률 등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영향으로 기업들의 매출감소, 투자위축 등 국내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며 그동안 설비투자 확대를 선도해온 통신산업의 투자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더욱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21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5G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였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5G망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 활성화는 요원해질 것이라는 평가임.

이에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2+1%에서 5+1%로 상향시키며, 세제지원 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산을 확대시킴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망 구축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안 제25조의7).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7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6"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 $\frac{2}{100}$ "를 " $\frac{5}{100}$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은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등 구축물·차량·운반구·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	공제) ①
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	
신 기지국 시설에 <u>2020년 12월</u>	2022년 12월
<u>31일</u>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	31일
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비율 <u>(100분의 3</u>	<u>(100분의 6</u>
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 1 100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 1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 10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
<u><신 설></u>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은 5
	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물 등 구축물・차량
	・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2)	•	(3)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 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외한다)을 말한다.						
<u>3</u> • <u>4</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⑤</u> <u>제4항</u> 까지						